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요구하는

2002 대선 여성공약

風여성바람希

평 · 등 · 대 · 통 · 령

한국여성단체연합 지부 및 회원단체 연락처

한국여성단체연합 지부

단체명	전화	팩스	E-mail	홈페이지
경기여성단체연합	031-233-8663	031-233-8663	kwau2001@hotmail.com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062-225-6078	062-225-6076	kcwau@hanmail.net	kcwau.chamnet.org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053-421-6758	053-424-1245	dwa@chollan.net	
부산여성단체연합	051-852-6647	051-817-4320	pwhi2001@hanmail.net	
전북여성단체연합	063-287-3459	063-287-1226	jwau21@hanmail.net	www.chonbukwomen21.or.kr
경남여성단체연합	055-264-8322	055-266-0816	mcw15050@hanmail.net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단체

단체명	전화	팩스	E-mail	홈페이지
경남여성회	055-282-9603	055-282-9606	knwm@chollan.net	
기독교민회	02-2265-7957	02-2263-8090	kwm1986@chollan.net	
대구여성회	053-421-6758	053-424-1245	dwa@chollan.net	www.daeguwomen21.or.kr
대전여성회	042-257-3534	042-257-9790	women3534@hanmail.net	www.tjwomen.or.kr
부산성폭력상담소	051-513-2475	051-513-2476	wopower1@htrunet.com	www.wopower.or.kr
부산여성사회교육원	051-802-6083	051-802-6084	feminedu@feminedu.or.kr	www.feminedu.or.kr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02-747-2442	02-747-2447	kcwc21@jinbo.net	
새움터	031-867-4655	031-867-3031	swoom@chollan.net	
수원여성회	031-241-7530	031-241-7532	swa@kg21.net	www.swa.or.kr
안양여성회	031-458-3050	031-459-3877	awa95@hanmail.net	
여성사회교육원	02-2278-7705	02-2278-7706	wsr@wsr.or.kr	www.wsr.or.kr
울산여성회	052-266-7159	052-266-7169	ulsan-women@hanmail.net	www.ulsanwomen.org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02-529-6349	02-529-6332	kwfa@chollan.net	kwfa.hihome.com
제주여성회	064-756-7261	064-756-7262	jeju.women@hanmail.net	
충북여성민우회	043-252-8124	043-252-0815	cbwomen@cbwomen.org	cbwomen.org
평화를만드는여성회	02-2264-8649	02-2275-4861	wmp@chollan.net	www.peacewomen.com
포항여성회	054-275-7436	054-282-1799	phwomen@hanmail.net	phwomen.org
한국보육교사회	02-2275-8505	02-2275-8506	kdta@chollan.net	www.kdta.or.kr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2890	02-338-7122	ksvrc@korea.com	www.sisters.or.kr
한국여성노동자회의	02-365-8763	02-365-8766	kwnet@kwnet.org	www.kwnet.org
한국여성민우회	02-737-5763	02-736-5766	minwoo@womenlink.or.kr	www.womenlink.or.kr
한국여성연구소	02-2273-6206	02-2273-6207	kws189@hanmail.net	
한국여성의전화연합	02-2269-2962	02-2237-1823	hotline@jinbo.net	www.hotline.or.kr
한국여성장애인연합	02-3675-9935	02-3675-9934	kdawu@hanmir.com	kdawu.org
한국여성학자협의회	02-2275-7754	02-2269-0670	kawt@chollan.net	www.feminist-theo.or.kr
함께하는주부모임	053-425-7701	053-424-6885	hamjumo@hanmail.net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02-708-5894	02-708-5899	hakbumo@chollan.net	www.hakbumo.or.kr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연합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2층
전화 : 02-2273-9535 전술 : 02-2273-9539
홈페이지 : http://www.women21.or.kr e-mail : kwau@women21.or.kr

인권정보자료실
Mc1.18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연합

2002. 10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요구하는
2002 대선 여성공약



風여성바람**希**

평 · 등 · 대 · 통 · 령



사단
법인 **한국여성단체연합**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2층
전화 : 02-2273-9535 전송 : 02-2273-9539

홈페이지 : <http://www.women21.or.kr> e-mail : kwau@women21.or.kr

■ 2002년 대선 여성공약집을 내면서

21세기는 '남녀평등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예측해 왔습니다. 그러나 21세기의 첫 문에 들어선 우리에게 이 말은 아직 장미빛 꿈일 뿐입니다. 이 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들이 남녀평등사회의 상과 이에 도달하기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바로 이러한 여성들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성연합은 대통령 선거시기에 각 후보들에게 여성들이 바라는 공약을 제시하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대통령 선거시기마다 여성정책이 좀더 활발히 논의되도록 하고 집권 후 약속한 공약중 일부가 국가 정책으로 채택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이제 여성 유권자들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정치적 존재로 성장했습니다. 여성 유권자들이 대통령 선거시기에 더욱 능동적으로 여성의 요구를 전달하고 양성평등의 기준에 따라 대통령을 선택할 것임을 밝힌다면 평등 의식을 갖춘 대통령이 탄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연합은 '2002 대선여성연대' 결성을 제안하여 전국 100여 곳에서 여성의 정치적 힘을 모아 소용돌이치게 하기 위한 큰 바람을 일으키려 합니다. 여성연합이 6개 지부, 27개 회원단체와 함께 마련한 여성공약은 여성 유권자들의 정치적 힘을 결집시키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2002 대선에서 여성이 일으키는 큰 바람, 평등바람이 부정부패에 오염된 정치를 몰아내고 남녀가 함께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을 희망합니다.

風여성의 바람希, 평등대통령,
여성의 한 표가 결정합니다!

2002. 10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경숙 이강실 정현백

순 서

■ 여성이 바라는 3대 핵심과제	1
■ 여성이 바라는 10대 주요 과제	2
■ 여성이 바라는 60개 세부과제	3
I.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및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3
(1) 호주제 폐지, 양성평등한 신분등록제도 도입 및 성씨선택 자유조항 신설	3
(2) 한부모 가족을 위한 경제적·정서적 지원책 수립	5
(3)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법 개정 및 정서적 지원책 수립	6
(4) 여성의 평등한 재산권 보장을 위한 부부공동재산법 제정	7
(5) 가사노동 가치를 GDP에 제정	9
(6) 여성의 독립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10
II. 평생평등 노동권의 대상확대 및 정착화	12
(7) 임시적·간헐적 업무의 경우에만 임시직 허용	12
(8) 고용형태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노동법, 4대 보험법 전면 적용	14

(9) 간접차별 기준 세밀화	16
(10) 기업 30% 여성 채용목표제 실시 의무화 및 고용평등 실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17
(11) 여성 근로감독관 증원 및 성인지적 교육을 통한 행정감독 강화	18
(12) 육아휴직 급여를 남녀평균 임금의 50%로 상향조정, 대체인력 시스템 마련	19
(13) 사회복지, 공공서비스 분야 등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20
(14)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IT분야 여성 인력개발	21
(15) 저소득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 확대	22

III.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 방지 및 인권보호 24

(16) 성매매방지법 제정	24
(17)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제도 마련	26
(18) 성매매방지를 위한 종합대책기구 설치	28
(19) 가출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을 막기 위한 단기 쉼터 확대	29
(20) 성폭력특별법을 개정하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 강화	31
(21) 성폭력특별법을 개정하여 성폭력의 개념과 범위 확대	33
(22) 사이버 성폭력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	36
(23) 학교 성폭력 방지를 위해 교육부·교육청 내에 성폭력 담당 부서 설치	38
(24) 가정폭력 사건의 신속한 처리 및 보호처분제도 실효성 제고	39

(25) 가정폭력 피해자를 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	42
(26)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체계화, 지원을 통한 전문성 강화	44
(27) 폭력예방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공무원 및 국민대상 교육 강화	45

IV. 여성의 가족보호 노동의 사회화 및 아동과 노인의 인권보호 47

(28) 차등 보육료제 도입, 국공립 및 정부지원 보육시설 50%까지 확대	47
(29) 방과후보육 및 영아전담보육시설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49
(30) 재가 노인복지서비스 및 치매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	50
(3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51

V. 저혜택 여성의 복지 및 인권증진 52

(32) 여성 농민 평생건강관리 시스템 도입 및 농촌형 산후조리센터 설립	52
(33)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하에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 설치 및 위원의 50% 여성농민참여 보장	53

(34) 관련부처내 여성장애인 전담인력 배치, 국회의원 및 고위 정책 결정직에 여성장애인 할당제 실시	54
(35) 여성장애인의 출산 및 육아,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책 마련	55
(36) 여성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교육, 고용 확대방안 마련	57
(37)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 강력처벌 및 성매매된 외국여성에 대한 보호방안 강화	59
(38)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를 도입 및 인권보호방안 마련	61

VI. 모성보호 증진 및 여성건강 정책 수립 63

(39) 기초출산수당제, 분만수당제 도입	63
(40) 출산의 질적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	65
(41)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 정책 수립	66

VII. 각 분야 정책에 양성평등 관점 통합 - 성주류화 68

(42) 여성부내 성인지적 정책분석 및 모니터 전담 부서 설치, 각 부처 성평등 정책 이행실태 보고서 의무화	68
(43) 여성정책담당관 확대	70
(44) 여성부 권한, 인력 및 예산 확대	71

(45) 성인지적 예산 정책 수립	73
(46) 공무원 대상의 성평등 교육 강화 의무화	75

**VIII. 양성평등 의식의 정착과 확대를 위한
 교육 · 미디어 · 문화 정책 수립** 76

(47) 일상생활의 성차별 관행 개선을 위한 캠페인 전개	76
(48) 방송위원회 내 여성분과위원회 설치, 성평등 가이드라인에 따른 모니터 강화	77
(49) 미디어 산업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여성고용할당제 도입	78
(50) 성차별 프로그램에 대한 삼진아웃제도 도입	79
(51) 양성평등 교육을 정규과목으로 채택	80
(52) 교사대상의 성평등 교육 강화	81
(53) 각종 국가 고시에 양성평등 관련 과목 채택, 법 집행자에 대한 성인지 교육 의무화	82

VIII.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여성의 대표성 확대 84

(54)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및 실효성 있는 여성 할당제 실시	84
(55) 장 · 차관 등 고위직 임명시 여성 30% 이상 할당	86
(56) 여성공무원 승진 목표제 도입	87
(57) 정부 및 지자체의 모든 위원회에 여성 50% 할당	88

X. 지속가능한 대안사회를 위한 여성참여 확대 89

- (58) 평화·통일분야의 주요 심의 기구에 여성참여 확대 및 남북여성교류를 위한 지원 강화 89
- (59) 반전·평화정책 수립과 남북상호군축 실시 91
- (60) 환경정책에 여성적 관점을 도입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92

여성이 바라는 대선 여성과제

■ 여성이 바라는 3대 핵심과제

(1) 호주제 폐지

호주제를 폐지하고, 양성평등한 신분등록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2) 고용안정, 고용창출

여성노동자 비정규직 확산규제 및 차별철폐, 여성 일자리 창출

(3) 보육의 공공성 확보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확대 등 전체 보육비용의 50% 국가 부담

■ 여성이 바라는 10대 주요 과제

- (1)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폭력 근절 및 피해자 지원 강화
- (2) 의회 및 공직,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여성 할당 30% 이상 보장
- (3) 한부모 가족을 위한 경제적·정서적 지원책 수립
- (4) 모성보호비용 사회분담 전 여성으로 확대 및 생애주기별 여성건강정책 수립
- (5) 평화·통일 정책에서의 여성 50% 참여확대 및 반전·평화정책 수립
- (6) 여성장애인 관련 부처 내 전담 인력 배치 및 자립생활 지원체계 마련
- (7) 여성 농민의 모성보호, 건강, 육아를 위한 지원 시스템 확충
- (8) 성평등 의식 정착을 위한 교육·미디어·문화정책 실행
- (9)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대상층 확대 및 치매노인을 위한 의료 서비스 확대
- (10) 성평등적 관점이 통합된 예산 및 국가정책 수립

■ 여성이 바라는 60개 세부과제

I.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및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1) 호주제 폐지, 양성평등한 신분등록제도 도입 및 성씨선택 자유조항 신설

▶ 정책요구

- 16대 국회 회기 내에 호주승계제도, 부가입적제도, 부성강제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 양성평등한 신분등록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자녀는 부모의 합의 하에 성씨를 정하도록 하고 형제 자매는 동일한 성과 본을 쓰도록 해야 한다.

▶ 현황 및 필요성

- 남성우선순위로 호주를 승계하여 가족관계를 기록하는 호주제도(민법984조)와 세계 유일하게 성씨 선택을 아버지 성으로 강제하는 부성강제조항(민법781조 제1항)은 남녀차별, 부부차별, 부모차별을 온존시키고 있다.
- 호주제도는 2001년 3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서부지원이 민법 제778조,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에 대하여

위헌제정을 함으로써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계류 중이다. 이와 같이 위헌 소지가 많은 호주제는 21세기 양성평등 시대를 거스르는 악법으로 하루 빨리 폐지되어야 한다.

▶ 법 개정 요구 내용

민법 제4편 제2장 [호주와 가족] 삭제

제4편 제8장 [호주승계] 삭제

제826조제3항 부부간의 의무 개정

(2) 한부모 가족을 위한 경제적·정서적 지원책 수립

▶ 정책요구

- 여성 인력개발센터, 자활후견기관 등에서 한부모의 연령과 적성, 능력에 맞는 다양한 직종 개발, 소자본 창업 지원 등을 실시하고, 훈련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
- 한부모 가족지원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서비스 제공

▶ 현황 및 필요성

- 여성 한부모의 경우, 결혼생활 동안 직업생활과 단절되어 있었던 한계로 인해 직업을 갖기 어려워 여성 한부모의 빈곤화가 초래되고 있다. 자녀가 있는 여성 한부모의 경우, 경제력의 부족이 자녀양육과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가족관계, 대인관계, 사회생활에서도 위축되게 한다. 이혼한 여성 한부모들은 양육비를 받는 경우가 적어 경제적으로 더욱 빈곤하며 경제적 문제로 인해 자녀 양육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 한부모들은 일과 자녀양육의 이중적인 부담을 갖고 있다. 자녀양육 및 교육에서의 어려움은 여성 한부모를 지치게 하고 죄책감을 갖게 하며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어떻게 자녀와 의사 소통할 지에 대해 난감해 하고 있다.

(3)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법 개정 및
정서적 지원책 수립

▶ 정책요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모자복지법의 보완(양육 및 교육비의 현실화등 한부모 가족 지원 근거 마련)
- 모자보호시설 및 자립시설의 프로그램 활성화
-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한부모 가족에 대한 한시적 지원방안 명시
- 합의 이혼시 자녀의 부양의무 명시 및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대신 부양비용을 지급하고 구상권 행사

▶ 현황 및 필요성

- 한부모 가족(2000년 통계 전체가구중 한부모 가구 9.4%/여성 한부모 80.4%)중 7.1%만이 공적부조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복지 측면에서 한부모에 대한 지원이 빈약하여 보육 및 교육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한부모를 차별하는 호주제, 주민등록제도 등으로 인해 여성 한부모의 심리적인 고통이 크다.

(4) 여성의 평등한 재산권 보장을 위한 부부공동재산법 제정

▶ 정책요구

- 혼인 중 배우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소득노동&가사노동포함)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부부공동재산법 제정
-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공동명의로 바꿀 경우 취득세 비과세화, 등록세 한시적 면제

▶ 현황 및 필요성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조사(2000)에 의하면 배우자의 재산상태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이 27.8%(부인 34.4%, 남편 20.4%)로 나타나고 있다. 소유재산 중 거주하고 있는 집의 명의는 남편명이가 76.2%, 부인명이가 12.2%, 부부공동이 3.0%이다.
-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을 공동명의로 바꿀 경우 현재 2%의 취득세와 3%의 등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취득세의 경우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즉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이므로 비과세 되어야 마땅하고, 등록세도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조치를 취하여 공동명의를 높임으로써 여성의 재산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 법 개정 요구 내용
부부공동재산법 제정

(5) 가사노동 가치를 GDP에 계정

▶ 정책요구

가사노동가치를 GDP에 계정하고 연금, 재산 분할권, 재난 시 여성피해자 보상금 등에 반영해야 한다.

▶ 현황 및 필요성

- 국민연금에서 노령수당을 지급할 때 아내에 대한 가급 급여가 약 15만원(년)으로 산정되어 있다. 이는 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현재, 재난 발생시 주부피해자의 일실회의 산정기준을 일용직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이를 가사노동가치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여성의 독립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 정책요구

- 1인 1연금을 위한 기초 연금제 도입
- 재혼시 연금 분할권 인정
-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발생시 노령연금 100% 지급, 유족연금 50% 지급 등 연금 병급제도 개선
- 연금 크레딧 제도 도입

▶ 현황 및 필요성

- 2001년 6월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 어떤 형태, 어떤 수준으로든 공적으로 소득을 보장받는 규모는 총 86만 명으로 65세 이상 노인 대비 24% 수준에 불과하다. 이 중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중상위 계층이 7.7%(274천명), 경로연금만 수급하는 차상위 저소득 계층이 6.9%(244천명), 공공부조와 경로연금을 수급하는 저소득 계층이 9.6%(339천명)이다. 65세 이상의 공적소득보장 수급자 중 여성의 비중을 보면, 중상위 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공적연금 수급자 비중은 17%에 불과하고 저소득층이 수급하는 공공부조 및 경로연금 수급자 비중은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에 비해 여성노인의 소득 분포가 저소득층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결혼률 감소, 이혼율의 급증 등 가족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여성이 남성배우자의 피부양자 지위로 노후소득을 보장받는 현재의 모델로는 상당수의 여성노인이 노후소득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 법 개정 요구 내용

국민연금법 개정

II. 평생평등 노동권의 대상확대 및 정착화

(7) 임시적·간헐적 업무의 경우에만 임시적 허용

▶ 정책요구

명목적 비정규직이 근절될 수 있도록 임시적·간헐적 업무의 경우에만 임시직을 허용하도록 하고, 단시간 근로에 대한 평등대우를 법적으로 세밀화 해야 한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부터 명목적 비정규직을 근절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

▶ 현황 및 필요성

- 2000년 8월 현재 여성노동자중 73.3%가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여성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다름없는 장시간의 노동(정규직의 주당 노동시간을 100으로 할 때, 비정규여성노동자의 노동시간은 106.6)을 하면서도 각종 사회보험 및 부가급여의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 비율은 국민연금 22.1%, 건강보험 24.6%, 고용보험 22.6%) 특히 여성 비정규노동자들의 경우 월 평균 임금이 665천 원으로 정규직 전체 평균의 42.4% 수준에 불과하여 차별이 구조화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체에 대

한 조사·감독이 부실하여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불법적 차별이 만연해 있는 상태이다. (통계청, 2000)

- 여성연합과 '비정규노동자기본권보장 및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2000년 임시직 규제와 비정규직에 대한 균등처우 조항 강화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청원하였으나 2002년 7월 현재까지 노사정 위원회에서 일부 조항의 개정만이 논의되고 있어 비정규노동자의 차별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규제가 매우 미약하다.

▶ 법 개정 요구

근로기준법 제 5조, 21조, 23조, 24조, 25조

(8) 고용형태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노동법,
4대 보험법 전면 적용

▶ 정책요구

단시간, 임시직, 특수고용형태, 파견 등의 고용형태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4대 보험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 현황 및 필요성

- 고용형태의 다변화로 인해 비임금 비정규직 형태인 학습지 교사, 골프장의 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 등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특수고용형태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지금까지 근로형태에 따라 노조법상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한 행정해석의 사례도 있으나, 행정해석 및 판례의 대부분이 형식적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있어 고용형태를 교묘하게 활용한 차별이 더욱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 법 개정 요구

근로기준법 제 14조, 15조

(9) 간접차별 기준 세밀화

▶ 정책요구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 규정 등에 간접차별 기준을 세밀화 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 의식과 관행, 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에 의해 나타나는 간접차별에 대한 판단 및 해석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 현황 및 필요성

계속된 법 개정 및 단속의 결과 여성에 대한 직접적인 차별은 완화되고 있으나 법으로 단속하기 힘든 간접차별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의 조사결과(2001년)에 따르면 기업 내 여성들은 업무 배치시 대체로 남성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기 때문에 여성들의 업무 전환이 어려우며(조사대상자의 64.1%) 승진심사 시 인사고과와 상사의 주관적 의견이 여성에게 불리하다(조사대상자의 91.5%)고 대답하는 등 기업 내 여성에 대한 간접차별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0) 공기업 30% 여성 채용목표제 실시 의무화 및 고용평등 실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 정책요구

공기업에 30% 여성 채용목표제 실시를 의무화하고, 기업 내 남녀고용평등 정착을 위해 고용평등을 실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을 통한 재정지원, 금융혜택, 조세감면, 특별자금지원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현황 및 필요성

97년 대통령 선거당시, 한나라당은 공무원·정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고용·승진 30%을, 국민회의는 공공부문 여성 20~30% 여성할당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이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현재 여성노동자의 73.3%가 비정규직인, 심각한 여성 고용문제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부터 선도적으로 여성 채용목표제를 실시하여 여성의 정규직 채용을 장려해야 한다.

(11) 여성 근로감독관 증원 및 성인지적 교육을 통한
행정감독 강화

▶ 정책요구

전체 근로감독관과 여성근로감독관을 대폭 증원하고 여성 노동관련 사안에 대한 전문화 교육을 강화하며, 권리구제 담당 위원회에 30% 이상 여성 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

▶ 현황 및 필요성

- 사건을 일차적으로 접수, 처리하는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의 절대다수가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실에서 고용상의 성차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여성근로감독관의 대폭적인 증원을 통해 성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 현재 근로감독관의 절대 부족으로 진정 등의 형태로 접수 되어야만 차별 사안에 대해 조사와 처리를 하고 있을 뿐 노동현장에서의 성차별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도, 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다.

(12) 육아휴직 급여를 남녀평균 임금의 50%로 상향조정,
대체인력 시스템 마련

▶ 정책요구

육아휴직 급여를 남녀 평균 임금의 50%로 상향 조정하고, 남녀의 육아휴직 사용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기업을 위한 대체인력 시스템 마련 및 휴가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한 행정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 현황 및 필요성

2002년 7월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육아휴직제도가 유급으로 전환된 지난해 11월 이후 2002년 6월까지 육아 휴직자 수는 모두 1,300명으로, 정부 예상 2만 명뿐만 아니라 무급이던 2001년 육아휴직자수 2,226명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았고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당초 확보한 전체예산의 1.8%만을 지출하는데 그쳐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13) 사회복지, 공공서비스 분야 등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 정책요구

새로운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 필요가 절실한 지역 사회복지, 공공서비스 분야의 전문 직종을 개발하고 대폭적인 예산지원을 통해 이 분야의 고용 시스템을 안정화해야 한다.

▶ 현황 및 필요성

2001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9%이다. 이는 경제 협력 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10%포인트 낮고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20%포인트 가까이 낮다. 이에 비해 한국의 여자대학생은 인구 10만명 당 3507명인 세계 6위 수준으로, 한국의 여성 인력의 질은 선진국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사회적 공공성 서비스 확충과 연결시켜 여성의 무보수 보살핌 노동을 사회분담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14)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IT분야 여성 인력개발

▶ 정책요구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IT 분야 여성 유망직종 중심으로 개편하고, 강사 및 프로그램 전문화를 통해 훈련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취업과의 연계를 높여야 한다.

▶ 현황 및 필요성

2001 '일하는 여성의 집'을 '여성인력개발센터'로 개칭하고 전문직종 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여전히 교육 프로그램이 한정된 직종에 제한되어 있고 교육의 전문성이 낮은 단기교육 위주여서 전문 직종으로의 취업율이 낮은 상태이다

(15) 저소득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 확대

▶ 정책요구

- 가내노동자 보호제도 마련,
- 최저임금제 정액급여의 50%이상 증액
- 여성 친화적 자활 프로그램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대상 범위 확대
- 저소득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 2002년 실업자 707,000명 중 여성실업자는 244,000명(2002. 4. 통계청)으로 나타났지만 구직을 포기한 여성들의 실업률이 통계에 잡히고 있지 않음을 전제할 때 실질적인 여성의 장기실업자 비중은 늘어나고 있으며, 고연령·저학력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어려운 중장년 여성들은 실업과 빈곤의 굴레에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극빈층의 최저생활보장과 근로능력이 있는 자들에게 노동을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 중 여성의 비율이 60% 가까이 되지만 여성수급자

들을 위한 특별한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고, 다수의 빈곤 여성들은 그나마의 복지서비스 혜택에서도 소외된 사각지대에 처해있다.

III.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 방지 및 인권보호

(16) 성매매방지법 제정

▶ 정책요구

- 성적 인신매매된 여성에 대한 감금, 폭행, 협박, 갈취를 통해 여성의 성을 상품으로 판매하고 이득을 챙기는 성산업 업자들을 처벌하고 부당 수익을 몰수하는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 선불금, 소개비 등 명목의 취업각서 등으로 형성된 채권채무관계를 무효화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현황 및 필요성

- 2000년 9월 군산 대명동 성매매 업소에서 일어난 화재로 감금된 5명의 여성이 사망하고, 2001년 2월 부산 완월동 성매매 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감금되어 있던 여성 4명이 사망하였다. 또한 2002년 1월 군산 개복동 성매매 업소에서 역시 감금되어 있던 여성 14명이 화재로 사망하였다. 이 화재사건의 희생자들은 감금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인신매매와 성매매 강요, 폭행, 착취 등에 시달려왔다.

- 2001년 새움터에서 실시한 경기도 지역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31개 시, 군에 기지촌이나 유리방 형태부터 기업형 성매매 업소까지 다양한 업소들이 존재하고 있고, 집결지만 해도 33개 지역의 1,442개의 업소 및 7,096명의 여성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신시가지 중심으로 기업형 성매매 업소가 나타나고 있는데 6개시(고양,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의정부)의 총 9개 밀집지역에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전화방 등이 1,129개가 존재하고 11,045명의 여성이 있다. 경기도는 모든 유형의 성매매 업소가 존재하고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군기지 주둔으로 성매매가 확산되고 있으며 국제적 인신매매가 시작되고 확산되는 지역이다.

▶ 법 개정 요구 내용 성매매방지법 제정

(17)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제도 마련

▶ 정책요구

- 성매매 피해여성의 치료와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제도 마련
- 탈 성매매 여성에 대한 경제보조, 주택지원, 직업 지원, 의료기관과 상담연결, 법적 지원 등 장기적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 및 쉼터 설치
- 성매매 피해자 전문상담원 양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성매매 피해자를 수급자로 선정하는 특례조항 신설
- 여성단체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시설을 정부지원 시설로 인정하여 피해자의 수급권 인정

▶ 현황 및 필요성

- 선도보호시설 혹은 부녀복지상담소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기존의 상담 복지서비스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지원 내용이 제한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성매매 피해자들의 자활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상담 및 쉼터 제공, 의료 보호 및 경제적 지원책 마련 등이 시급히 이

루어져야 한다.

▶ 법 개정 요구 내용

- 성매매방지법 제정
- 성매매 피해자 보호관련 예산 증액

(18) 성매매방지를 위한 종합대책기구 설치

▶ 정책요구

국무총리 산하에 여성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노동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연구자, 법률가, 관련민간단체로 구성된 성매매방지 종합대책기구를 설치하여 국가 차원에서 성매매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이행을 점검해야 한다.

▶ 현황 및 필요성

성매매 피해여성의 구제와 자활, 성매매 예방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이 수립되고 이에 따른 각 부처의 다각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나, 현재 성매매 문제를 전담하는 부처간 협력 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부처별 대응이 비효율적으로 분산되고 있다.

(19) 가출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을 막기 위한 단기 쉼터 확대

▶ 정책요구

- 가출 청소년이 성매매 및 유해환경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기쉼터를 우선적으로 확대
- 가출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거주안정을 위한 그룹홈 확충
- 대안교육과 무료 직업훈련 체계 등의 재활 시스템 구축

▶ 현황 및 필요성

- 청소년 보호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가출 여자 청소년의 9.2%가 성매매를 경험했고, 15.2%가 술집·단란주점 등의 유해업소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청소년 보호위원회, 「가출여자청소년의 가출 후 운락 및 유해업소 종사경험」, 2001). 최근 성매매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임금이 싸고, 사회적 대처능력이 미숙한 청소년들을 유해업소에 불법 고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성매매 청소년들의 인권보호와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사회 시스템 구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 2001년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성매매 경험자 중 여학생의 비율이 71.4%에 이르고, 성매

매 청소년들의 69%가 인터넷 채팅, 27.4%가 전화방, 26.2%가 유흥업소를 통해 성매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성매매를 매개하는 환경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청소년 성매매 예방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20) 성폭력특별법을 개정하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 강화

▶ 정책요구

- 친고죄 전면 폐지
- 가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제도 도입
- 피해자의 신원을 누설한 공무원 및 언론기관 처벌
- 수사나 재판 과정에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허용
- 13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인의 경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한 진술 허용
- 성폭력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신설
- 성폭력 보호시설 이용중인 피해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로 지정

▶ 현황 및 필요성

- 현재 성폭력방지법은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법적 절차가 개시되므로 가해자는 피해자의 고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무고, 명예훼손 등으로 피해자를 고소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상황을 직접 진술해야 하므로 조사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가족 등 제 3자가 고소할 수 있도록 해야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압력을 받아 법적 구제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 최근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원하는 민간 단체를 무고 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범죄 내용을 증명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가해자가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 강제추행으로 가해자를 고소할 경우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 법 개정 요구 내용
성폭력특별법 개정

(21) 성폭력특별법을 개정하여 성폭력의 개념과 범위 확대

▶ 정책요구

- 성폭력에 대한 개념 규정을 현재의 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가 아닌 성적 자기결정권 및 보호권에 대한 침해죄로 형법과 성폭력특별법 개정
-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은 강제력이 없어도 성폭력범죄로 인정
- 성폭력의 정의에 '배우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추가하여 배우자가 구타 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해야 함
-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 추가

▶ 현황 및 필요성

- 2000년 성폭력범죄 발생현황을 보면 강간이 6,855건으로 1시간 17분에 1건씩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4시간 43분에 1건씩(1999년) 발생하는 것에 비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아직 성폭력범죄에 대해 신고를 기피하는 우리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강간범죄는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 연령도 7세 미만 유아가 4~5%, 7세~13세 어린이가 8~10%, 14~19세의 청소년이 2

5~30%를 점유하고 있고 성폭력 가해자들이 친인척이나 직장동료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통계에 의하면 2001년 상담건수는 3,593건이고 이 중 83.3%인 2,869건이 성폭력 피해상담이며, 724건이 기타(스토킹, 혼인빙자)상담이다. 또한 성폭력 피해 상담은 2000년에 2,307건에 비해 15% 증가한 수치이다. 2001년도 한국성폭력상담소 통계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보면 미성년 피해가 38.9%로 어린이, 유아 성추행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며, 미성년자 가해자 또한 증가하고 있다. 상담건수 중 339건이 미성년자 가해자에 의해 발생한 상담이다.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성폭력상담소의 2001년도 상담 통계를 보면 284건의 성폭력 상담이 이루어졌고 성폭력 피해 유형은 강간 159건(55.9%), 성추행 88건(30.9%), 성희롱 44건(15.5%) 순이다. 또한 피해의 지속성을 보면 1회에 그친 경우가 132건(46.5%), 2회 이상 96건(33.8%), 1년 이상 50건(17.6%), 5년 이상 6건(2.1%) 등으로 나타나 일반 성폭력 피해보다 지속적 피해의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1년 이상의 피해가 20%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지속적인 피해에 따른 후유증이 심각하다. 특히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성폭력이 심각하지만 친고죄 적용으로 성폭력 범죄가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에만 규정되어 있는 직장내 성희롱 규정을 성폭력특별법에도 삽입하고, 사업주만 처벌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확대하여 동료 및 하급자에 의한 성희롱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법 개정 요구 내용
성폭력특별법 개정

(22) 사이버 성폭력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

▶ 정책요구

- 사이버성폭력 피해신고센터 활성화, 사이버수사대의 인력 보강, 피해자 관점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교육강화
-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인터넷 업체의 정기적인 모니터, 안전한 인터넷 환경 구축을 위한 자율규제 재정지원과 인센티브 제도 활성화
- 사이버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캠페인 등 민간 차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 현황 및 필요성

정보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사이버 성폭력이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가 폭발하고 여성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남성 가해자, 여성 피해자의 모델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대안사회정책연구소와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네티즌 52000명 대상으로 2001년 1월 11일~19일까지 조사한 사이버 성폭력 피해실태를 유형별로 보면, 검색 요구가 29.6%, 번색 요구가 15.8%로 많이 나타났으며 사이버 스토킹 피해도 16.6%나 있다. 남자보다 여자에게 피해가 더 많이 일어났는데 여성의 경우 검색 요구가

41.6%, 번색 요구가 20.8%, 온라인 스토킹이 21.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나이가 어릴수록, 중고등학생 일수록 피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 학교 성폭력 방지를 위해 교육부·교육청 내에
성폭력 담당 부서 설치

▶ 정책요구

학교내 성폭력 방지를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에 학교내 성폭력 실태조사, 상담 및 교육,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성폭력 담당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 현황 및 필요성

교사에 의한 제자에 대한 성폭행은 그동안 그 실태가 드러나지 않다가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학교사회에서 교사와 제자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드러내기 힘들고 피해사실을 드러낼 경우 교권에 대해 도전한다고 역공을 받거나 피해자한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치부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이를 숨겨왔다. 따라서 학교내 성폭력 문제를 상담하고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매우 시급한 상태이다.

(24) 가정폭력 사건의 신속한 처리 및 보호처분제도 실효성
제고

▶ 정책요구

- 피해자와 가해자의 즉시 격리, 체포 및 범죄수사가 가능하도록 응급조치 조항 강화
- 가정폭력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이 수사지침에 명시된 대로 가해자를 조사하여 폭력의 재발생 방지
- 응급조치 조항에 따라 개시된 가정폭력범죄는 수사 개시 후 2주 이내에 검사에게 송치, 그 외 가정폭력범죄는 2개월 이내에 송치하며 이후 1개월 이내에 송치
- 경찰서에서 가정폭력 사건을 접수했을 때 임시조치 청구를 의무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24시간 이내에 신청하도록 허용
- 피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요청할 경우 이를 받아들여 신속히 처리
- 가정폭력 행위자가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의 미 이행시 형사처벌로 가중처벌, 임시조치나 보호 처분시 격리명령과 반드시 병과하도록 함
-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폭력사실만을 가지고 있을 때 피해자 자신이 가정보호사건, 임시조치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현황 및 필요성

- 2001년 한국여성개발원이 서울·경기 기혼남녀 1,924명 대상으로 가정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30.8%의 폭력 발생률을 나타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리등에관한특별법이 시행된 후 검찰에 접수된 가정폭력사건은 월 접수건수가 200건 미만에서 1,100건을 상회할 정도로 크게 증가하여 1998년 7월부터 1999년 9월까지 15개월간 접수건수는 총 7,294건에 이른다.
- 서울지방검찰청이 처리한 가정폭력사건 중 1998년 10월부터 1999년 1월까지 처리한 119건에 대하여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건의 가해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97.5%가 남자였고, 전체 119건 중 가해자가 여자인 경우는 단지 3건(2.5%)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가정폭력은 주로 남자에 의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를 기준으로 유형을 나누어보면 119건 중 배우자에 대한 폭력이 96건으로 전체 가정폭력 범죄의 80.7%를 차지하고 과거 배우자였던 자에 대한 폭력까지 포함하면 90.7%로 나타나 가정폭력은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이라고 볼 수 있다. 가해자의 39.5%가 폭력행사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도구의 72.3%는 골프채, 망치, 각목 등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의 처분을 보면 기소유예처분이 52%, 가정법

원송치처분이 32.8%, 불구속구공판과 기소중지가 3.4%이다.

- 가정폭력을 신고했을 경우 경찰이 출동하기는 하나 가해자를 조사하지 않고 부부간의 문제이니 알아서 하라는 식의 처리가 아직도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접근금지 명령을 요청했을 경우, 경찰이 이를 무시하거나 처리를 지연시켜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법 개정 요구 내용

가정폭력방지법 개정